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8
----------	------

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의자 : 정인화 · 윤영일 · 진선미
황주홍 · 이동섭 · 송기석
주승용 · 김철민 · 이완영
최도자 · 김삼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공 건수가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에 대한 안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예컨대 현행법 제27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조금 신청은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고 지급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 권리 향

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호조치 신청 등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안내 방안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2조의2(보호조치 신청 등 안내)</u></p> <p><u>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1.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u></p> <p><u>2.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u></p> <p><u>3.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u></p> <p><u>4.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u></p> <p><u>5.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u></p> <p><u>② 안내 방안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